

안산시 장기동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 2754

제출년월일 : 2015.11.1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『안산시 장기동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』의 장기동 기증 운동추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개정 필요(2015. 12. 31. 만료)와 일부 용어 정비.

□ 주요 내용

- 가. “위원회의 존속기한” (안 제3조의2)

□ 개정 조례안 : [붙임 1]

□ 입법법예고결과 : “의견없음”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붙임 2]

□ 현행조례[전문] : [붙임 3]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“해당없음”

□ 예산 수반사항 : “해당없음”

□ 기타참고사항 : 붙임

- 방침결정문

○ 입법 예고결과보고서 : “의견없음”

○ 성별영향평가보고서 : “의견없음”

○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: “의견없음”

[붙임 1]

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15년” 을 “2020년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15인” 을 “15명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1회에 한하여” 를 “한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과반수로” 를 “과반수의 찬성으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단원보건소” 를 “상록수보건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, 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 를 “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 해제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 ” 를 “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보건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	보건 행정과장
	직위·성명	최 진 숙
	담당·팀장	건강증진계장
	직위·성명	신 영 순
	담당자	신 영 순
	성명·전화	(행정 5924)

[붙임 2]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설치) <u>시장은</u>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위원회설치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한다)은 -----
제3조의 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 12월 31일</u> 로 한다.	제3조의 2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0년</u> -----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</u> 을 포함하여 <u>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	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<u>15명</u>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	제6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 <u>한 차례만</u> -----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 을 두되 간사는 <u>단원보건소</u>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.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과반수의 찬성으로</u> ----- ③----- <u>1명</u> ----- <u>상록수보건소</u> ----- ④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<u>에 따라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
1. (생략)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	1. (현행과 같음) 2.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
제10조(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 ① (생략)	제10조(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중 제2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등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